

년 제 기 (월 일 ~ 월 일)

[illegible]

이 매출대장은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, 거래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.

① ~ ③: 제출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.

⑤: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진료용역의 공급명세만을 적습니다. 매출 순서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, 공급받는 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매출한 진료용역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.

⑥: 진료용역을 공급한 일자를 적습니다.

⑦: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35조제5호 각 목에 따른 면세사유를 적습니다.(가. 가축 진료 나. 수산동물 진료 다. 장애인 보조견 진료 라. 기초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 마. 질병 예방 목적 진료)

⑧: 진료한 동물의 종류를 적습니다.

⑨: 공급한 진료용역의 일반적인 명칭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. (예) DHPPL(종합백신) 예방접종, 심장사상충 예방약 투약, 중성화 수술, 혈액검사, 항원검사

⑩: 진료용역의 공급가액을 적습니다.

⑪~⑬: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진료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를 적고, 그 외의 경우에는 진료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성명, 연락처를 적습니다.

⑭: 장애인 보조견 진료의 경우 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번호를 적습니다.

※ 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(갑)을 초과하는 진료용역이 있는 경우 『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(을)』 [별지 제47호서식(2)]에 이어서 작성합니다.

